

광주지방법원 2023. 8. 16 선고 2022가단53574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유병연, 김정원, 박환철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민국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철

변 론 종 결 2023. 7. 19.

판 결 선 고 2023. 8. 16.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C[(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라남도 나주시 D] 사이에 2020. 1. 7.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C[(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라남도 나주시 D]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2020. 1. 7. 접수 제50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E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F저축은행은 2016. 3. 2. C에게 1,500만 원을 대출하였고, 위 대출금채무는 2020. 1. 3. 연체되었다.

나. 2020. 12. 11. F저축은행으로부터 위 대출금채권을 양수한 원고는 C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21차전2733), 2021. 2. 22. “C은 원고에게 7,436,148원 및 그중 5,483,811원에 대하여 2021. 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1.7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내려져 2021. 3. 11. 확정되었다.

다. C은 2020. 1. 7.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C, 채권최고액 7,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2020. 1. 7. 접수 제503호로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20. 12. 11. 위 대출금채권을 양수받았고 2021. 3. 11.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그 무렵 C의 재산상태를 조사, 확인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사실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로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22. 8. 17.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는바, 원고가 위 대출금채권을 양수받은 시점 내지 위 지급명령의 확정시점에 C의 재산상태를 조사, 확인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사실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로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한편,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고,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사해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 입증도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인 2020. 1. 7. 당시 F저축은행은 C에 대하여 대출금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양수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① 이 사건 부동산은 C이 2019년 전소유자인 G로부터 매수하여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그 실제 소유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부담한 피고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은 C의 책임재산에 변동이 없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부담하여 C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피고가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선의였다고 주장한다.

위 ① 주장을 보건대,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이 2019. 3. 23. 이 사건 부동산을 G로부터 매수하여 2019. 5. 3.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부담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74874 판결이 실시하는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은 C의 소유로서 그 책임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① 주장은 이유 없다.

위 ② 주장을 보건대, 사해행위에 있어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바,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해할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나아가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C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피고가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초과에 빠져 있는 C과 위 대출금채무의 연체 직후에 그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할 뿐이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결국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석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전라남도 나주시 H 대 608㎡

2. 전라남도 나주시 H

[도로명 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D

연와조 시멘트와가지붕 단층 주택 60.83㎡

부속건물

시멘트블럭조 스테이지붕 단층 창고 20.17㎡, 끝.

